

# 부산광역시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7. 18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7. 18
- 다. 상 정 일 자 : 2006. 7. 27 (제1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 상정, 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주민생활지원과장 조 동규)

### 가. 제안이유

2006. 2. 6부터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」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### 나. 관계법령

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조, 제14조, 제15조

### 다. 주요골자

#### ○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센터장 선임방법(안 제2 · 3조)

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· 장려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고,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직영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, 기타의 경우에는 센터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함

#### ○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 · 6 · 7조)

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,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영할 수 있도록 함.

#### ○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· 운영(안 제9 · 10조)

센터에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함

○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(안 제13조)

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함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 건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」이 지난 2006년 2월 6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자원봉사 센터설치와 센터운영위원회 구성,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마련함으로써
- 행정의 안전성과 효율성 재고는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한다고 생각되며
- NGO 등 자원봉사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추세임에 비추어 입법절차는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
- 중구를 비롯한 동구, 북구, 동래구에서는 조례가 기히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고 여타 구에서는 입법예고 등 진행 중에 있음
-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